

코트디부아르 (Cote d'Ivoire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적용대상	근로자	근로자	
보험료율 (근로자 / 사용자)	14% (6.3% / 7.7%)	14% (6.3% / 7.7%)	-
노령연금 지급요건	가입기간 15년, 60세	가입기간 15년, 60세	
노령연금 지급률 (40년)	50%	50%	-
일시금	가입기간이 2년 미만, 60세 = 총 납부보험료 반환 가입기간 2년~15년 미만, 60세 = 가입자의 평균 연소득· 납부연수퇴직 시 기대수명 고려	가입기간이 2년 미만, 60세 = 총 납부보험료 반환 가입기간 2년~15년 미만, 60세 = 가입자의 평균 연소득· 납부연수퇴직 시 기대수명 고려	외국인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2년(연금) 및 1968년(사회보장법)
- 현행법 : 1999년(사회보험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민간부문 근로자
- 적용제외 : 자영자
- 특별제도 : 공무원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월 가입 소득의 6.3%
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하한액 없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액은 이전 법정 월 최저임금(36,607 CFA Francs)의 45배임
- 자영자 : 해당없음
- 사용자
- 임금지급 총액의 7.7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소득 상한액은 이전 법정 월 최저임금(36,607 CFA Francs)의 45배임
- ※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며, 19인 이하 사업장은 분기별 납부
- 정부 : 없음; 사용자로서 납부

5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- 노령연금
 - 납부기간 또는 크레딧 기간이 15년 이상인 60세 도달자
 - 출산 또는 산재급여 수급기간과 같이 특정 상황은 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고용이 중단되어야 함
 -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55세 이상 가입자는 최대 24개월까지 가입기간 납부 가능
 - 조기연금 : 납부기간 또는 크레딧 기간이 15년 이상인 55세 도달자
 - 자녀보조금 : 21세 미만의 각 자녀(최대 최초 3명)에게 지급
 - 해외 지급 가능
 - 노령수당
 - 납부기간 또는 크레딧 기간이 2년 이상 15년 미만인 60세 도달자
 - 출산 또는 산재급여 수급기간과 같이 특정 상황은 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노령청산금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2년 이하인 60세 도달자;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영구 출국 시 연령에 관계없이 지급
- 장애연금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납부기간 또는 크레딧 기간이 15년 이상이며 소득능력을 66.7% 이상 상실했다고 판정된 자
 - 출산 또는 산재급여 수급기간과 같이 특정 상황은 납부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
 - 자녀보조금 : 21세 미만의 각 자녀(최대 최초 3명)에게 지급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경우 지급

- 수급가능 유족은 55세(조기연금의 경우 50세) 이상이며 사망자와의 혼인기간이 2년 이상인 배우자 및 21세 미만인 완전 고아(배우자의 21세 미만 피부양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연령 및 혼인기간 요건 없음)
- 배우자연금은 재혼 시 정지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• 노령연금

- 2000년 1월 1일 이전 가입연수 당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1.33%씩 산정한 금액에 2000년 1월 1일 이후 가입연수 당 월 평균소득의 1.7%씩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
-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(60,000 CFA franc)의 50%
- 월 최대연금액은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간의 가입자 평균소득의 50%
- 조기연금 : 정상퇴직연령 이전 수급하는 1년 당 5%씩 감액. 다만, 이미 월 최대연금액 수급요건을 충족했거나 근로할 수 없는 자는 제외
- 자녀보조금 : 각 수급가능 자녀 당 노령연금액의 10%(합산 최대 30%까지)
- 연금은 해외에 분기별로 지급 가능
- 급여조정 : 제도의 재원에 따라 생계비 변화에 따라 급여 조정
- 노령수당 : 가입자의 평균 연간소득, 납부기간 연수, 퇴직 당시 기대수명 및 이자율을 가산하여 지급
- 노령청산금 : 가입자 총 납부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급여

• 장애연금

- 2000년 1월 1일 이전 가입연수 당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년 동안의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1.33%씩 산정한 금액에 2000년 1월 1일 이후 가입연수 당 월 평균소득의 1.7%씩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
- 자녀보조금 : 각 수급가능 자녀 당 노령연금액의 10%(합산 최대 30%까지)
- 월 최저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(60,000 CFA franc)의 50%
- 급여조정 : 제도의 재원에 따라 생계비 변화에 따라 급여 조정

○ 유족연금

- 배우자 연금 :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권이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50%를 매월 배우자에게 지급. 미망인이 1명 이상인 경우(1964년 일부다처제 금지 이전에 혼인한 자) 균분지급
- 조기연금 : 55세 이전 수급하는 1년 당 5%씩 감액(배우자의 21세 미만 피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감액 없음)
- 완전고아연금 : 각 수급가능 고아 당 사망자가 수령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

또는 장애연금액의 20% 지급. 모든 완전고아연금 합산액은 사망자의 노령 또는 장애
연금액 100%

- 급여조정 : 제도의 재원에 따라 생계비 변화에 따라 급여 조정

7 관리운영기관

- 고용사회보호부(Ministry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)
 - 기술적 감독
- 재정경제부(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)
 - 재정 감독
 - <http://www.finances.gouv.ci>
- 사회보험청 및 국가사회보험기금(Social Insurance Institute and National Social Insurance Fund)
 - 노.사.정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며 제도 운영
 - <http://www.cnps.ci>

<2019년 ISSA 자료>